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3
------	------

2020. 4.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4.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가. 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디어재단 신설에 따라 폐지된 교통방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함(안 부칙 제2조)

1) 지역발전본부 : 2020년 6월 30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2) 문화시설추진단 : 2020년 8월 18일 → 2021년 8월 18일까지

나. 교통방송 폐지('20. 2. 17.字)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는 교통방송(2020.2.17.字)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의 운영현황(안 부칙 제2조 관련)

-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¹⁾, 서울시는 현재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 추진단’의 3개 기구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지역발전본부	2016.07.01~2020.06.30	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2016.08.19~2020.08.18	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남북협력추진단	2018.11.01~2020.10.31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조성을 강화하고 민간·정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이번에 1년씩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지역발전본부’ 와 ‘문화시설추진단’ 은 서울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확대 등에 기여해 오고 있음.
- 지역발전본부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개발과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동북부 일자리·문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마곡 융·복합 첨단 R&D 혁신거점 구축, ▶수색·DMC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4대 권역, 총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시설추진단은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역균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된 시립도서관 건립 등 총 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 개정안은 오는 6월과 8월에 존속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지역발전본부’ 와 ‘문화시설추진단’ 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기구들은 2016년 한시기구로 신설된 이후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4회차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시기구의 성과목표를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장을 해오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승인 하면서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이 만료(2021.6.30.)되는 즉시 폐지하도록 조건부 승인이하였음.
- 이는 자율신설기구를 통해 한시기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와 임시기구를 정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점진적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음²⁾.
- 그러나 서울의 성장동력 육성과 신경계 중심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공정이 2025년 이후 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46개의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의 건립과

2) 자율신설기구 설치 후 17개 시·도에서 한시기구를 운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3개)와 세종시(1개) 외에는 없음.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추진단’의 경우도 2025년까지 34개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며, 매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기적 경제·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 SOC사업의 안정적 확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규기구로의 편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 이와 함께 시장방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4개의 범외기구(임시기구)에 대해서도 정규기구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임시기구 운영 현황〉

부서명	설치일자	주요업무
국제협력관	2013.12.02.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 수립,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 등
대기기획관	2011.11.29.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 보급 등 기후환경본부장 보좌
재생정책기획관	2012.09.28.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실장 보좌
주택기획관	2011.11.29.	주택공급 관리, 주거복지 사업 등 주택건축본부장 보좌

- 한편,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임.
- 종전의 「행정기구·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

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한시적 행정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의’ 로 개정(2004.12.18.)된 바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의 하위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토록 하여, 사실상의 ‘승인권한’ 을 유지·행사하고 있음.
-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2019.8.23.)한 바 있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임.

라. 교통방송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7조부터 안 제109조까지)

- 개정안은 ‘교통방송’ 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로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기구(사업소)에서 교통방송을 삭제하고 있음.
- 교통방송은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사업소로 설치(1990.3.20.)되었음.
- 그러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따른 기술혁신 요구로 조직구조와 기능, 조직문화의 혁신의 필요성과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문제 등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9.7.18.)과 함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교통방송 소속 직원 총 448명이 재단법인 소속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방송제작·지원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148명도 일반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
- 교통방송 정원은 일반직공무원 16명, 임기제공무원 148명, 프리랜서 185명, 파견용역 87명, 공무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지 예정인 대표직(개방형 3급)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163명의 정원은 본청 등으로 재배치될 예정임³⁾.
-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2020.2.17.)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재단이 출범한 2월 임시회에서 교통방송 관련 행정기구 규정 정비를 적기에 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적된 서울시 출연 재원의 과도한 의존 문제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사항인 서울시로부터의

3) 재단법인화와 소속 직원 147명의 신분 전환에 따라 고용승계와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재단법인 직원 채용이 진행(2019.12.16.~2020.2.17.)되었음.

4) 교통방송은 재단화를 추진하며 tbs라디오의 상업방송 유치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상업광고를 불허함에 따라 2020년 미디어재단tbs의 세입예산의 77%인 291억 1천만원(9개월분)을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음.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⁵⁾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마. 종합의견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디어재단tbs의 신설과 교통방송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향후 1~2년 이내에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를 전제로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했으나, 이들 기구의 사업 완료 시점은 존속기한을 경과할 것이 예상되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의 통·폐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임.
- 또한 교통방송의 폐지로 확보되는 공무원 정원은 기관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미디어재단t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9개가 신설되었고, 마곡산업단지관리재단, 물재생시설공단의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투자·출연기관의 과도한 남설이 우려되므로 향후 신규 투자·출연기관의

5)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허가 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제출’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음(2019.12.26.).

설립은 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적 효과, 목적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3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디어 재단 신설에 따라 폐지된 교통방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함(안 부칙 제6859호 제2조)

1) 문화시설추진단: 2020년 6월 30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2) 지역발전본부: 2020년 8월 18일 → 2021년 8월 18일까지

나. 교통방송 폐지('20. 2. 17.字)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3) 「소방기본법」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3. 19.~3. 23.):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6월 30일” 및 “2020년 8월 18일”을 각각 “2021년 6월 30일” 및 “2021년 8월 1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0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이 절에서 “교통방송”이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상암동)에 둔다.</u></p> <p><u>③ 교통방송의 영문표기는 Seoul Traffic Broadcasting System으로 하되, “tbs”로 약칭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108조(대표) 교통방송에 대표를 두고, 대표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109조(소관사무) 대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p><u>1.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현행	개정안
<p>2. <u>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u></p> <p>3. <u>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및 운영</u></p> <p>4. <u>광고방송의 편성·조정</u></p> <p>5. <u>그 밖에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1조 (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u>2020년 6월 30일</u>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0년 8월 18일</u>까지로 한다.</p>	<p>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1조 (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u>2021년 6월 30일</u> ----- ----- <u>2021년 8월 18일</u>-----.</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 2133-6724)